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7)

미성년자가 주인 없는 반려견의 응급수술을 맡긴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 어느 날 한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그 아이는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어가는 강아지 밍밍이를 발견하고는 무작정 명의동물병원에 데리고 온 것이다. 아이는 지나는 길에 강아지를 발견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일단 치료부터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어린 아이의 부탁을 무작정 거절하기도 난감하였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없이 치료를 다 해주기에는 너무 큰 수술이었고 입원도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치료비를 부담할테니 치료를 해달라고 하였고, 김명의 수의사도 아이의 연락처만을 받고 수술을 모두 끝마쳤다. 김명의 수의사는 아이의 아버지인 이길동씨에게 치료비로 3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길동씨는 자신은 강아지의 치료를 맡긴 일이 없으며, 아이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맡겼단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아이를 나무랐다면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렇게 이길동씨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무작정 밍밍이를 일주일째 입원시키고 있던 날, 우연히 명의동물병원앞을 지나던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안에 자신의 강아지 밍밍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주인씨도 밍밍이를 잃어버리고 밍밍이를 찾던 중이었던 것이다.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그 강아지는 자신의 반려견 밍밍이가 틀림없다면서 당장 밍밍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의 수의사는 밍밍이가 치료를 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300만원을 지급해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자신은 밍밍이의 치료를 맡긴 일도 없으며, 아이가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니 그 아이의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밍밍이의 치료비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반려견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수술을 맡기는 경우는, 난처한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반려견을 우연히 데려온 사람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애매하고, 보호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명사랑의 정신만으로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은 사업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보통 이런 경우, 반려견을 데려온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김명의 수의사의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 김명의 수의사는 이길동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 어린 아이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은 법률적 효과가 있을까?

만일 밍밍이를 데려온 사람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 사람은 밍밍이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일단은 김명의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이가 어린 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거래행위에 제한이 따른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거래는 미성년자 스스로가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한 후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이는 상식상 불합리하며, 그 미성년자를 믿은 상대방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취지는 거래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는 자신이 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는 그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이길동씨는 김명의 수의사로부터 치료비를 청구받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밍밍이의 치료라는 거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길동씨에게 밍밍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효과는?

거래가 취소되면 그 거래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그 거래행위로 자신이 얻은 이익을 반환함으로써 그 거래가 당초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이길동씨에게 밍밍이의 치료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길동씨나 그 아이는 밍밍이의 치료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밍밍이의 치료로 이익을 얻는 자는 밍밍이의 소유주이며 이길동시가 아니다. 이길동씨의 아이도 밍밍이를 맡길 때부터 자신은 밍밍이의 주인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이길동씨에게 밍밍이의 치료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할 수도 없다.

2.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와 나주인씨가 밍밍이의 치료라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만 나주인씨는 밍밍이의 치료라는 이득을 얻은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밍밍이의 치료라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명의 수의사와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계약상의 위험을(치료를 맡긴 사람이 치료비가 없거나 수의사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거래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계약상의 위험이라 한다.) 거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소유주에게 전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게 되면, 소유주(나주인씨)가 일을 맡긴 사람(이길동씨 및 그 아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을 처리한 사람(김명의 수의사)에게는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소유주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면 거래에 관한 법률적 원칙들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

나.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위해 대신 밍밍이를 치료해 준 것이므로 보수를 받을 수는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밍밍이를 치료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는 없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밍밍이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보호자를 위해 일단 밍밍이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며 밍밍이를 수술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법률상 '사무관리'라고 하는데,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무관리가 인정되려면 김명의 수의사가 구체적으로 밍밍이의 주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치료를 하였어야 하며, 이런 의사가 있었음을 김명의 수의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위해서 밍밍이를 치료하였다기 보다는 이길동씨의 아이의 말을 믿고 밍밍이를 치료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법률의 허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의 수의사는 이길동씨나 나주인씨 모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길동씨에게는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그 부모에 의해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나주인씨에게는 치료를 맡기지 않은 주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역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일면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반려견을 구하였으나 오히려 이길동씨의 아이나 나주인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받지 못할지언정 치료비마저도 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밍밍이의 치료를 맡긴 사람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 만일 성년이 밍밍이의 치료를 맡기면서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의 법률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십시오.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싣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